

의안번호	2220152
의 퇴 인	백혜련의원
회 답 일	2026. 9. 9.
추계번호	26C3831

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재난보건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시, 추가재정 소요는 2028년 960만원, 2032년 96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,800만원(연평균 96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-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재난보건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9조·제10조)	9.6	9.6	9.6	9.6	9.6	48	9.6

주: 1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- 2.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재난건강영향평가)	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재난이 재난 노출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난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재난건강영향평가 및 결과 공표의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7조(장기 추적조사)	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건학적 위험도가 높아 제9조에 따른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 추적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난 노출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(제4항)	
		제1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의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(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질병관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난건강영향평가, 제7조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 및 제11조에 따른 재난 노출자 사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정보 보건시스템 구축·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(제4항)	
		질병관리청장은 재난정보 보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(제5항)	재량규정
		그 밖에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6항)	의무규정
4	안 제9조(재난보건 심의위원회)	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(제1항)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	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		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(제2항)	
		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
6	안 제11조(재난 노출자 사례관리)	질병관리청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 노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(제2항)	
		사례관리의 내용·방법·절차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자격·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7	안 제12조(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(제1항)	재량규정
		재난보건 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보건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2항)	
		재난보건 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재난건강영향평가)	×	(미첨부)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(안 제6조) 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고 재난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난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과 그 중 재난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알 수 없으므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2	안 제7조(장기 추적조사)		- (안 제7조) 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재난보건심의위원회가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심의·의결한 재난 노출자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장기 추적조사 대상인 재난노출자 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3	안 제8조(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	- (안 제8조) 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재난보건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해당 시스템의 설계안과 그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, 유지관리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에 한계가 있음
4	안 제9조(재난보건심의위원회)		(공식추계) 질병관리청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5	안 제10조(위원회의 구성)		
6	안 제11조(재난 노출자 사례관리)	-	(미대상) 질병관리청: 국가트라우마센터 ‘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’ 운영 중 - 2026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: 100백만원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7	안 제12조(재난보건 수행 기관의 지정)	×	(미첨부)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(안 제12조) 제정안 조항은 재량규정으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재난보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지정될 재난보건 수행기관과 수,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현시점에서 사업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기존 사례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 - 질병관리청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- 제정안 부칙은 이 법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재난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·제10조)
 - 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질병관리청 유사 사례인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
- (민간위원 수) 제정안에 따라 12명으로 가정¹⁾
 - (회의횟수)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2025년 운영 실적을 근거로 연 4회로 가정
 - (회의수당 단가) 기획예산처의 「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²⁾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재난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약 4,8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재난보건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민간위원 수(명, A)	12	12	12	12	12	-	-
회의 횟수(회, B)	4	4	4	4	4	-	-
회의수당 단가(백만원, C)	0.2	0.2	0.2	0.2	0.2	-	-
추가재정소요(백만원, A×B×C)	9.6	9.6	9.6	9.6	9.6	48	9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기존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국가손상위원회의 경우 2026년 민간위원은 위원 15명 중 6명이나, 제정안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제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되도록 가정하였음

2) 「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(기획예산처) -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0,000원내(서면심사 150,000원내)에서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,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(220목) 또는 일반수용비(210-01목)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.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소임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소임	02-6788-4742	soimlee@assembly.go.kr